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6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의자 : 박윤옥, 이경숙, 김현택,
한근수, 손정자, 전해연,
박경원, 김지훈(민),
이진환, 이수련, 한송연

1. 제안 이유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인
으로 자립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안 제5조, 제6조)
- 사무 위탁 및 비밀누설 금지 (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자립준비청년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급
3.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재정관리 지원
4.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자립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수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으로 재정 수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임
 -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립지원대상자(15세이상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는 ‘24.7.31.기준으로 142명, 2024년 시 자체사업 예산은 행사운영비 22,000천원임
 -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 중 신청자 위주 운영 예정으로 기존 사업 유지 및 신규사업 추진 시에도 50,000천원 이하로 사업비 소요 예상됨

※ 2024년 추진 사업 신청 현황

추진일	사업명	신청자(A)	대상자(B)	신청율(A/B)	비고
4.20. 9월중	WE PLAY 동행지기 한가족 행사	33	115	28%	행사운영비(시비), 연2회 추진
9.1.~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9	115	0.7%	비예산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